



: 2018-10-18

수 원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6가단803773 소유권이전등기
원 고 1. A
2. B
3. C
피 고 D
변 론 종 결 2017. 8. 9.
판 결 선 고 2017. 9. 6.

주 문

1.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,

가. 원고 A에게 각 1,251.25/6,658지분에 관하여,

나. 원고 B에게 각 1,251.25/6,658지분에 관하여,

다. 원고 C에게 각 1,251.25/6,658지분에 관하여

2015. 5. 5. 합의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위적으로, 주문 제1항과 같다.



예비적으로,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,

가. 원고 A에게 각 1,251.25/6,658지분에 관하여,

나. 원고 B에게 각 1,251.25/6,658지분에 관하여,

다. 원고 C에게 각 1,251.25/6,658지분에 관하여

2015. 5. 5. 조합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들과 피고는 E의 소개로 2012. 9. 21.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)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.

나.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은 각 992/6,658지분, 피고의 남편인 F은 2,645/6,658지분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고, E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,037/6,658지분을 공유하게 되었다.

다. 원고들 및 F, E과 피고는 2013. 3. 12.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편의상 피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, G이 건축 및 개발을 책임지며, 개발이 끝나면 피고 및 G이 원고들 및 F, E에게 토지보상금액(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1억 3,020만 원, F에 대하여는 3억 4,720만 원, E에 대하여는 1억 3,620만 원)을 지급하기로 하였다(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라고 한다).

라. 이 사건 이행합의에 따라 피고는 2013. 3. 19.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, E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3. 3. 12.자 매매를 원인으로, F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3. 3. 12.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쳤다.



마.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추궁을 받게 되자 2013. 5. 3.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,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였다.

바. 원고들은 2015. 5.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고, 이에 피고는 2015. 5. 5.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을 각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이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(각 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반환하여 달라는 원고들의 요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5. 5. 5. 원고들의 지분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2015. 5. 5.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보건대, E이 매매계약 중개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신 명의의 1,037/6,658 지분을 포기하였으므로, E이 포기한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과 F에게 각 1/4 비율로 $259.25 (= 1,037 \times 1/4) / 6,658$ 지분씩 균등하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원고들의 지분은 결국 각 $1,251.25 (= 992 + 259.25) / 6,658$ 지분이 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이 사건 이행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이 완료된 후 토지보상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, 설령 이 사건 이행합의가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지에 따른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이행합의 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새로이 이뤄



: 2018-10-18

진 2015. 5. 5.자 합의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김익환



: 2018-10-18

별지

부동산 목록

1.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H 전 400m²
2.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I 임야 2,856m²
3.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J 임야 3,402m² 끝.